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. 27(수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1. 27(수)
- 상정일자 : 2016. 02. 01(월) 제21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남동선)

-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 급증에 따라,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 급증에 따라,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는 본청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당초 633명에서 9명이 증가한 642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
 - 안 제3조 “별표2”는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

- 안 제4조 “별표3”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였으며
- 부칙으로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 검토 결과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33명”을 “64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21명”을 “63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6.12.31일까지로 하고, 올림픽운영과의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7.12.31일까지로 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 율	1%이내	5%이내	23%이내	29%이내	27%이내	14%이상	1%이내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-	100%	6% 이내	94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	100%		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42	642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20	620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7	12	2	4	1	8
6급 이하	588	588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